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6. 14.(화) 15: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6월 3일
- 회부일자: 2022년 6월 3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 조항 신설(안 제3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예산, 결산, 보조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 조문을 분리 및 구체화 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2021.7.13.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임
- 안 제3조에서는 예산계상신청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에 계상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 공고하도록 함.

-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시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매년 6월 및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 표기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명칭을 기존의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음
- 안 제2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주민 자율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조례 개정 시일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으며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일부 수정·보완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중 일부는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을 준용할 수 있었으나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

○○○시(도)교육청(○○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

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 또는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실장, ○○국장, ○○과장

2. 민간 위원은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교육감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서 회신과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2022. 00. 0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2**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민간경상(자본)보조	2,270,837
자치단체경상보조	12,283,102
계	14,553,939

□ 민간보조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단체수	지원액
언론사	9	212,100
예술단체	9	161,700
체육단체	1	8,000
교직원단체	5	52,000
장애인단체	2	8,000
환경관련단체	3	41,000
평생교육시설	4	1,155,237
문해교육시설	13	169,4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	63,000
기타(대안, 안전교육관련 단체 등)	19	384,500
합계		2,254,937

※ 차액: △15,900천원 (재무과-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모 저조)